

지식재산권 관리규정

제정 2016.03.01.

개정 2018.03.26.

개정 2020.08.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에 근거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'대학')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'산학협력단')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·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촉진 및 연구재원확보에 이바지하여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대학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발명” 이라 함은 특허법상의 발명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고안,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의 창작, 상표법상의 상표의 창안, 저작권법상의 일반 저작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 등을 포함한다.
- ② “특허” 라 함은 특허법상의 특허 이외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,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, 상표법상의 상표, 저작권법상의 일반 저작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 등을 포함한다.
- ③ “직무발명”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발명과 같다.

가.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직원이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수업결과물 및 창작 발명

나. 교직원 등이 외부의 재원(연구비 등)을 지원받아 창작하게 된 발명

다. 법률의 규정 및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귀속하게 된 발명

- ④ “자유발명” 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등에 관련된 법령이나 그 밖에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2장 신고 및 출원

제4조(지식재산권의 귀속) ① 발명자의 직무발명은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한다.

② 발명자는 제3자와의 교외연구과제를 체결함에 있어서 교외 수탁과제 연구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연구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직무발명의 신고) ① 발명자는 제2조 3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의하여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발명자의 제1항의 발명신고 시 직무발명신고서와 함께 명세서, 도면, 요약서 등 특허출원의 적격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유발명의 신고)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.

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권리승계결정의 통지) ① 제6조에 의한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에 대하여 그 적격성 및 타당성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에서 심사하여 권리승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(이하 '권리승계의 결정')을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결정(이하 '권리불승계의 결정')을 할 수 있으며,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권리불승계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본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정결과를 발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발명자는 제1항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권리승계합의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특허출원 및 유지의 결정) ① 위원회는 발명자로부터 승계 받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승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특허출원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특허출원비용의 일부를 발명자 또는 제3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허출원의 결정을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에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가 출원료 등의 기타 제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, 승계 받은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그 승계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부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③ 위원회가 특허출원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매년 특허권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3장 기술료의 분배

제9조(분배대상 및 비율)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의 실시허락,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기술이전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발명자와 협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발명이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해당분을 제외하고 순수입액을 산정한다.

- ③ 정부지원 연구과제 또는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분배 지급기준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계약의 지급기준을 따른다.

제10조(보상금 지급) ① 발명자 등이 대학과 산학협력단 임용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산학협력단이 승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보상금 지급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11조(발명자의 의무) ① 발명자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 특허권설정등록,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 허락에 있어서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
-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③ 발명자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발명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12조(교직원 이외의 발명자) 대학 및 산학협력단 교직원 이외의 발명자(이하 '외부발명자')가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외부발명자에 대한 제반 권리와 의무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②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- ③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직 무 발 명 신 고 서			
발 명 의 명 칭	국문: 영문:		
발 명 자	성 명	지분(%)	
	한글: 영문:		
관 련 연구과제	연구과제	지원기관	연구기간
발명의 기술적 특징(신규성, 진보성)			
상기의 발명을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고자			(서명)
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장			
※ 구비서류 1. 명세서, 도면, 요약서 각 1부			

